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08월 04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자비스자산운용(주)
(영문명) JARVIS Asset Managemen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jarvisam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2, 8층 (잠실동, 현대빌딩)
(전 화) 02-2135-5915

대 표 이 사 : 이 상 혁

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지원실장(대표이사 겸직)
(성 명) 이 상 혁 (전 화) 02-2135-5916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지원실 대리
(성 명) 박 예 인 (전 화) 02-2135-5915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7호)

최대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변경전	최대주주명	타이키파트너스(주) 외 2인
		소유주식수(주)	70,000
		소유비율(%)	30.31%
	변경후	최대주주명	타이키파트너스(주) 외 4인
		소유주식수(주)	95,000
		소유비율(%)	50.94%
2. 변경사유		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분취득	
3. 지분인수목적		최대주주(법인)의 계열사 임원의 투자목적 주식 취득	
- 인수자금 조달방법		기존 소액주주의 지분 취득.	
-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		없음.	
4. 변경일자		2026년 08월 03일(월)	
5. 변경확인일자		2026년 08월 03일(월)	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- 타이키파트너스(주) 2025년 주요 재무현황	
		[단위 : 백만원]	
		구 분	2025년
		자산 총계	2,300
		부채 총계	1,409
		자기 자본	891
		자본금	200
당기순이익	263		

【세부변경내역】

성명(법인)명	관계	변경전		변경후		비고
		주식수(주)	지분율(%)	주식수(주)	지분율(%)	
타이키파트너스(주)	최대주주	24,500	10.61%	24,500	13.14%	-
권성욱	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35,500	15.37%	35,500	19.03%	-
장윤석	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10,000	4.33%	10,000	5.36%	-
이상혁	변경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20,000	8.66%	20,000	10.72%	변경 전 주요주주
유무상	변경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0	0%	5,000	2.68%	-

*변경 후 지분율은 「상법」 제334조의3에따른 자기주식(의결권 없는 주식)을 제외한 변동 지분을 반영.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최대주주명”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소유주식수”는 변경전.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. 이 경우 「상법」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(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)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4) “소유비율”은 변경전.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(「상법」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“3. 인수목적(인수자금 조달방법, 인수후 임원 선.해임 계획 포함)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6)【세부변경내역】은 변경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변경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7) “관계”는 변경전 최대주주,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 변경전.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“비고”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.
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
- 주8)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(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자본총액 등)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주9)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